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(택지개발사업)

1 기본	현 황							
□ 사업개요								
사업기간	☑연례반복							
사업위치								
총사업비	총 1,248,084천원		시비) ,248,084천원	(보조율) 0 %	[구비]			
사업내용	공동주택을 분	- 등을 위하여 10 -양하는 자에게 부 -금(3%)을 구청점	과 및 정	장수한 학교				
사업형태	□직접수행 □자	치단체 보조 □민	간이전 □	출연출자 [□민간위틱	∤ ☑기타		
사업시행주체								
□ 사업 성격 및	및 사전절차 대	상 여부						
신규 계속 투자	심사 학술용역 기	술심사 지역보조심의	정보화심사	공유재산	안전예산	출자·출연		
경상 투자								
□ 사업 담당자								
실·국	부서명	과 장		팀장 Lo 23		<u>무관</u>		
주택건축국	공동주택과	진경식 2133-7130		ት우성 3-7140		상엽 5-7142		

2 예산설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4년 예산액	2015예산액 (A)	2016예산(B)	증감 (B-A)	(B-A)*100/A	
계	(x-)	(x-)	(x-)	(x-)	(x-)	
	842,485	659,848	1,248,084	588,236	89	
징수교부금	(x-)	(x-)	(x-)	(x-)	(x-)	
	836,560	653,655	1,248,084	594,429	90	

□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

과목구분	세부 산출1	 내역	
징수교부금	○ 징수교부금	=	1,248,084천원
	- 41,602,777천원*3%	=	1,248,084천원

3 사 업 설 명

□ 사업목적

○ 학교용지 확보 등을 위하여 100세대 규모이상 단독주택용지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 및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(3%)을 구청장에게 지급

□ 사업근거

- 법령상 근거 :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
 - 조례 :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
- 부과대상 : 100세대 규모 이상의 단독주택용지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개발사업시행자
- 부과기준 : 단독주택용지-분양가의 14/1000, 공동주택-분양가의 8/1000
- 집행방법 : 자치구의 징수실적에 의거 징수교부금(징수금 3%) 지급

□ 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14.1월 ~ 2014.12월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
- 사업내용 :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의 3%를 자치구청장에게 교부
- '16년도 소요예산 : 1,248,084천원

□ 추진경위

□ 중점추진사항(사업추진의 필요성)

- 추진방향
 - 건실하고 안정적인 세입확보
 - 자치구의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의욕 독려

□ 사업추진절차

○ 집행절차 : 예산편성 → 자치구 소유의 세입계좌 파악 후 계좌이체

□ 2016년도 추진일정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1,248,084	
자치구 세입계좌 파악	2016.03~2016.03		
학교용지부담금 입금조치	2016.04~2016.04	1,248,084	자치구 입금조치

4 사업효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3년도	○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지급 등 : 685,181천원
2014년도	○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지급 등 : 842,478천원
2015년도	○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지급 등('15년 10월기준) : 658,266천원

□ 향후 기대효과

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당초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2	(x-) 819,051	(x-)	(x-) 0	(x-) 819,051	(x-) 818,301	(x-)	(x-) 750

2013	(x-) 685,931	(x-) 0	(x-)	(x-) 685,931	(x-) 685,181	(x-)	(x-) 750
2014	(x-)	(x-)	(x-)	(x-)	(x-)	(x-)	(x-)
	842,485	0	0	842,485	842,478	0	7